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 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동작구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독립운동 지사들의 숭고한 전통을 본받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기념사업과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마. 유공자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 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fati@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지역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동작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동작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동작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념사업)**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기록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 보존·관리, 연구 관련 사업
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